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308 발의연월일: 2023. 1. 3.

발 의 자: 송언석·강대식·구자근

김미애 · 김상훈 · 김희곤

유경준 • 윤창현 • 이종성

전봉민 · 정희용 · 조은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면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있고, 국민의 알권리 보장,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면서 피의자가 「청소년 보호법」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피의자의 얼굴, 성명 및 나이 등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 중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는 과거의 사진으로 공개되어 피의자 식별이 매우 어 려우며, 이로 인해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.

이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,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확한 피의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(안 제8조의2제1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이 때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)	제8조의2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)
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	①
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	
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	
굴,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	
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	
<u><단서 신설></u>	다만, 이 때 공개하는 피의자의
	얼굴은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
	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
	<u>한다.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